강사인사규정

제정 : 2019.07.10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3.09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에 의한 “강사”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강사”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.

제2장 임 용

제3조(자격) 강사의 자격은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.

제4조(임용시기)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5조(임용절차)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②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「강사 신규채용 규정」에 따른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1.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·출산 휴가· 휴직· 파견· 징계· 연구년(6개월 이하)
2. 교원의 직위해제 ·퇴직· 면직· 사망
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략적 필요에 의

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과(계열)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.

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교육공무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영하며,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 <개정 2023.09.01., 2023.10.16>

제7조(임용제한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 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<개정 2021.12.01.>
2. 학과(계열)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<개정 2020. 03.01.>
4.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제8조(임용취소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
2.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
3.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(계열)의 모집정지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
4.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

제9조(당연퇴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은 자 <개정 2021.12.01.>
2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
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, 「사립학교법」 제57조에 해당하는 자
4.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는 해당 학기말에 당연퇴직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0조(면직사유)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3. 직무의 내·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<개정 2021.12.01.>
4. 학과(계열)가 모집정지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
5.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

6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당할 수 없는 경우
7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8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<개정 2020.3.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 가. 제14조 제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
 나. 수업 및 휴·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다.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
9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10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때

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
제3장 재 임 용

제11조(재임용) ①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.

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〔별표1〕 「강사재임용신청서」 및 관련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강사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③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재계약 예정 직전 학기 중에 실시하며, 재임용평가는 〔별표2〕 「강사 재임용 심사평가표」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01.>

④ 강의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전체교원의 하위10%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임용 학기가 3개 학기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⑤ 〔별표2〕「강사 재임용 심사평가표」의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⑥ 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퇴직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⑦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〔별표3〕「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」를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2조(재임용탈락시 소명) ①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

2021.12.01.>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3조(재임용거부)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1.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
2. 소속 학과(계열) 모집정지한 경우
3. 담당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
4.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

제14조(강사의 의무) ① 강사는 「사립학교법」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.
1. 수업과 관련된 문서(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, 교과목CQI보고서 등) 작성 및 준수
2.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처리 <개정 2021.12.01.>
3.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지도
4.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: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,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,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
③ 강사는「학칙」제51조에 의한 교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,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5조(소속) 강사가 본 대학교 내의 여러 학과(계열)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16조(교수시간)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.

제17조(처우) ① 임금은 본 대학교 「강사료지급규정」및 임금계약에 따른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②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③ 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(계열)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8조(휴직) ① 강사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출산휴가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② 육아휴직 및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③ 휴직 중인 강사는 본 대학교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19조(휴직기간 만료)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.
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총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한다. 다만, 학기 중에 복직된 경우 강의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,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근속년수에는 포함한다.

제5장 징 계

제20조(징계의 사유) 본 대학교의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1. 「사립학교법」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<개정 2021.12.01.>
2. 금품 ·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 · 유용,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성희롱 · 성폭력,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21조(징계사유의 시효)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·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범죄, 성매매, 성희롱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제22조(징계의 종류) ①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한다.
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학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제23조(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2020.03.01., 2023.10.16.>
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24조(강사징계위원회 위원장)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할한다.
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.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5조(제척사유)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26조(위원의 기피 등)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② 제1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<개정 2021.12.01.>
③ 제25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7조(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)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28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

다.

제29조(징계의결)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 한다.

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30조(징계의결의 기한)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1조(비밀누설의 금지)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2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「교원인사규정」 등을 준용하며,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강사 재임용 신청서

<table>
<tr><td>소속학과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본교 강사
최초 임용일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현 임용기간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담당
교과목</td><td>학기</td><td>교과목명</td><td>주당 시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1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2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재임용
요청기간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0000학년도 강사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: (서명)

교무학생처장 귀하

〔별표 2〕 <개정: 2023.09.01.>

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

학과(계열)	직번	성명	평가
			적합□, 부적합□

평가 항목	항목배점	배점한도	취득 점수
-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※ 미준수시 강좌당 2점 감점(1일 경과시)	10	0점~10점	
- 성적입력 및 성적 공시기간 준수 ※ 미준수시 강좌당 2점 감점(1일 경과시)	10	0점~10점	
- 교과목CQI 작성 기간준수 ※ 미준수시 강좌당 2점 감점(1일 경과시)	10	0점~10점	
- 휴·보강 준수 ※ 사전 허가 없는 휴강 또는 수업시간변경 : 1회당 -2점 ※ 보강미준수 : 1회당 -2점 ※ 수업시간변경원 입력 미준수 시 1건당 -0.2점	10	0점~10점	
- 강의평가 90%이상 - 강의평가 70% 이상~ 90% 미만 - 강의평가 50% 이상~ 70% 미만 - 강의평가 30% 이상~ 50% 미만 - 강의평가 10% 이상~ 30% 미만 - 강의평가 10% 미만	45 40 35 30 25 20	20점~45점	
-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하기 위한 노력	5	0점~5점	
-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미참여 : 교육당 -2점	10	0점~10점	
합 계		100점	

- 평가미달자 학과(계열) 발전기여도 가점	5	0점~5점	

심사결과(추가점수 포함)	적 합(70점 이상) □
	부적합(70점 미만) □

1) 심사결과 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.
2) 강의평가점수는 직전 2개 학기 평균점수로 평가하다.(단, 평가기간 중 신규임용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전1개 학기 점수로 평가)
3)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교원의 과반수 합의로 작성한다.
4) 재임용 기준 미달된 자에 대해 건학이념 및 대학발전 학과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에 헌신할 경우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할 수 있음

평가점수 70점 미달자에 대한 의견(가점 최대 5점) (건학이념 구현, 대학발전 또는 학과(계열)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서술)

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년 월 일

평가자	교무학생처장	성명	(인 또는 서명)
	교무팀장	성명	(인 또는 서명)
	학과장 (발전기여도 가점)	성명	(인 또는 서명)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〔별표 3〕

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

소　　속 :

사　　번 :

성　　명 :

생년월일 :

<강사 재임용 평가를 기준으로 거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>

0000학년도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:　　(서명)